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 적용〉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419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검토의견	3
1. 기타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안 제26조의2)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홍배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4. 8. 30.

다. 회 부 일 : 2024. 9. 2.

II. 제안이유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노동자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기관장 및 이사회 구성 시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미흡하여, 경영진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이 발생한 바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이나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의 다수 국가들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서울특별시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바 있음. 이후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제도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됨.

그럼에도 노동이사제 적용범위에서 기타공공기관이 배제됨으로써 도입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기타공공기관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음.

이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는 노사 간 협력적 관계를 증진시키고, 공공기관의 책임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기타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 기타공공기관 비상임이사 임명 - <u>(신설)</u>	○ 기타공공기관 비상임이사 임명 - <u>노동이사 1명 임명 필수</u>

노동이사제란 기업의 이사회에 노동자대표를 포함하여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개정안은 기타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노동이사(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노동이사 추천 및 동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노동이사제도의 핵심은 노동조합이 선임한 이사가 이사회 일원으로 참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으로 노동자 이사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서울특별시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바 있으며,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제도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음¹⁾.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 ② (생략)

③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2024년 9월말 현재, 32개 공기업 중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제외한 31개 공기업에서 노동이사 임명을 완료하였고, 준정부기관 중 16개 기관은 노동이사가 임명되지 않은 상황임.

[공기업·준정부기관 노동이사 임명 현황]

기관 유형	대상기관	임명완료	미임명
공기업	32	31	1 (* 한국광해광업공단 선임절차 진행 중)
준정부기관	55	39	16
계	87	70	17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을 살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관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며, 노동이사제 도입이 노사협력적 관계로 운영된다면 이사회 결정의 집행력과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기타공

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2022. 2. 3.>

1.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립대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제외한다)
2.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④ ~ ⑦ (생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 ~ ② (생략)

③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다른 법령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20. 6. 9., 2022. 2. 3.>

④ ~ ⑦ (생략)

공기관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 기관의 책임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지난 법개정 논의과정에서 기타공공기관은 조직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고, 이사회 형태가 노동이사제 적용이 곤란한 부분이 있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지 않았던바²⁾,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 적용은 이사회 구조 변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노동이사제를 먼저 도입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 성과를 보고 기타공공기관에 도입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있어 보임.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기타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은행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으로 법상 이사는 은행장이 추천하고 금융위원회가 임면하도록³⁾

2)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기타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주로 50인 미만 소규모 기관들이고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경인사연, 각자 독자적인 이사회가 아니라 경인사연이라는 어떤 연합체적인 이사회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국립대병원 같은 경우는 또 국립대병원에 맞는 자격을 갖추어야 되어 공기업·준정부기관 두 군데로 했으면 한다는 생각임.

자료 : 국회 회의록, 제392회-기획재정(안건조정)제1차(2021년12월31일)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노동이사제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금년 2월에 이미 공운법이 개정이 돼서 노동이사 1인이 포함되도록 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전부 주무부처 소관의 개별 설치법에서 관련되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건 개별 설치법으로 가야지 저희 공공기관법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 : 국회 회의록, 제400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2년12월5일)

3) 「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임원의 임면)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되어있으므로,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면밀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법무부는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동일하게 기타공공기관의 이사회에 노동이사를 포함하여 경영 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노사상생협력에 기여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노동이사제는 2022년 법률 개정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한하여 도입된 것으로 적용대상 확대는 운용 경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고용노동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경우, 기타공공기관이면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로서 임원(이사) 선임 및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동법 제23조4)는 이사는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는 해당 개정안과 충돌하게 되므로, 개정안 단서 조항에 관련 예외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기획재정부는 기타공공기관은 각 주무 부처 소관하에 개별설치법5)에 지배구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 의무도입 조항은 기타공공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 않은 공운법 체계와 맞지 않고 각 기타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와도 조화롭지 못하다는 입장임.

4) 「사립학교법」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② 이사는 감사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장 <u>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u> <u><신 설></u>	제4장 <u>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 등</u> <u>제26조의2(기타공공기관 비상임이사의</u> <u>임명) ① 기타공공기관의 비상임이</u> <u>사는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u> <u>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u> <u>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u> <u>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u> <u>경우 제6조에 따른 지정 당시 비상</u> <u>임이사가 없는 기타공공기관은 지정</u> <u>후 3개월 이내에 비상임이사 2명 이</u> <u>상을 선임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u> <u>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u> <u>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u> <u>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u> <u>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회</u> <u>의 비상임이사의 임명에 관하여는</u> <u>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u>③ 제1항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추천</u> <u>및 동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u> <u>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문의처

02)6788-5148